

#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8호 2002. 2. 26)

총무위원회  
2002. 3. 15(금)

## 1. 심사경과

- 가. 2002. 2. 26 사천시장 제출
- 나. 2002. 2. 26 총무위원회 회부
- 다. 2002. 3. 13 사천시의회 제63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상정

## 2. 제안설명요지(세무과장 김영태)

가. 제안이유

- 2002. 1. 1 시행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함

나. 주요골자

- (1) 재산세의 과세기준일 및 납기의 규정이 없어 보완(안 제24조2)
- (2) 과세 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세 납세의무자 규정 보완(안 제36조)
- (3) 농업소득세의 소득금액 신고를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 31일에서 5월 31일로 연장함(안 제50조)

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박명돈)

- 본 개정조례안은 2001. 12. 29.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그 시행을 위해서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: 없음